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[www.namwon.go.kr](http://www.namwon.go.kr)

제48호      2020. 9. 11(금)

<b>선 람</b>	기관의 장

<b>공 고</b>
------------

- 남원시 공고 제2020-1648호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----- 1
- 남원시 공고 제2020-1655호 도로지정 공고 ----- 8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공고 제2020 - 1648호

『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7일

남 원 시 장

##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개정이유

법률의 위임이 없는 강제징수 조항 삭제 및 재승인 신청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어려운 한자어 정비 (안 제11조제1항제3호)

- “수피” → “나무껍질”

나. 원인자의 재승인 신청 절차 명확화 (안 제20조제3항)

다. 부담금의 강제징수 규정 정비 (안 제22조제3항 삭제)

- 부담금의 강제징수 → 부담금의 징수
- 원인자부담금 징수 범위 명확화
- 강제징수 규정 삭제

라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정비 (안 제3조, 제20조)

**3. 입법예고기간** : 2020. 9. 7. ~ 2020. 9. 27.(20일간)

**4. 의견제출**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0년 9월 2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산림녹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가. 의견 제출 사항**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**나. 의견 제출할 곳**

: 우 55770 / 남원시 시청로 60, 산림녹지과

**다. 의견 제출 방법**

: 서면, 이메일(lki7326@korea.kr), fax(063-620-6447) 및 직접방문 등

**5. 기타사항**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산림녹지과 조경시설계(☎063-620-644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6. 붙임** :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: 2020. 08.

제 출 자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: 산림녹지과장

## 1. 개정이유

법률의 위임이 없는 강제징수 조항 삭제 및 재승인 신청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어려운 한자어 정비 (안 제11조제1항제3호)

- “수피” → “나무껍질”

나. 원인자의 재승인 신청 절차 명확화 (안 제20조제3항)

다. 부담금의 강제징수 규정 정비 (안 제22조제3항 삭제)

- 부담금의 강제징수 → 부담금의 징수
- 원인자부담금 징수 범위 명확화
- 강제징수 규정 삭제

라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정비 (안 제3조, 제20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0. 08. . ~ 2020. 09. .(20일간)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수목으로써”를 “수목으로서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3호 중 “수피”를 “나무껍질”로 한다.

제20조제3항 전단 중 “통보하여야”를 “알려야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”를 “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알려야”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“(부담금의 강제징수)”를 “(부담금의 징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2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할 자가”를 “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금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  
 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 
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  
 관계법령, 조성관리계획 등과  
 적합하지 않을 경우, 내용을 보  
 완하여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 
통보하여야 한다.

④ ~ ⑦ (생략)

제22조(부담금의 강제징수) ① 시  
 장은 제20조에 따라 부담금을  
납부 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 
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  
 하여 독촉하여야 한다.

② 삭 제

③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 
 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  
 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  
 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  
 를 징수 할 수 있다.

③ -----  
 -----  
 ----- 알려야 -----.

----- 재승인 신  
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승인  
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 
승인여부를 알려야 ----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부담금의 징수) ① -----  
 ----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  
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부  
담금을 -----  
 -----.

<삭 제>

<참고>

'20년 지자체 합동평가 과제 정비 권고사항

□ 유형

-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(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) 어려운 한자어 정비과제
-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(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) 경제적 권익 증진 관련

□ 문제점

- 어려운 한자어의 적절한 우리말로의 정비 필요
-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강제징수(재산권 제한)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단서 위배

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

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”

□ 개선방안

- 제11조제1항제3호 중 “수피” → “나무껍질”
- 제22조(부담금의 강제징수) → (부담금의 징수)
- ③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.  
→ <삭 제>

□ 소관부처

- 행정안전부

◎ 남원시 공고 제 2020 - 1655호

## 도로지정공고

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7일

### 남 원 시 장

○ 도로지정 공고내역

지정 번호	대 지 위 치	건축주 성 명	허가(협의) 및 신고번호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도로 면적 (㎡)	이해관계인		
							지 번	편입면적 (㎡)	토지소유자
2020-2 8	남원시 고죽동 산 107-4(임야)	박*길	2020-건축과- 건축신고-248	14	8	117	남원시 고죽동 602-20(창)	117	박*길